

KCR 4판 초안 제1장 ‘기술총칙’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the Chapter 1 ‘General Rules for Description’ in the draft of KCR4

김혜경, 남태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Kim Hye-Kyoung, Nam Tae-Woo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의 제1부 기술 중 제1장 기술총칙에 대한 각 조문을 AACR2R(1998), NCR(1996), ISBD(G)(1992)와 비교하여 보완과 수정이 되는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서론

20여년 동안 사용되어온 KCR3판은 ISBD를 기초로 해서 편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용하고, 자료유형의 다양성에 따른 기술대상자료나 기술규칙이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자료를 기술하는 KCR4판 초고가 완성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KCR4판 초안을 살펴보고 보다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1부 기술 중 규칙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중심이 되는 부분인 제1장 기술총칙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KCR4판 초안 중 목록규칙 전체를 통괄하는 제1장 기술총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ISBD(G), NCR(1996), AACR2R(1998)의 기술총칙 내용과 조문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분석하면서 각 규칙의 동일한 규정들은 생략하고 상이한 조항 중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 즉, 용어나 문맥, 예제등의 오류를 상세히 다루지 못하고¹⁾ 크게 비교·논의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3. 조문 비교 분석 내용

3.1 기술의 수준

먼저, 1.0 총칙부분에서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기술의 수준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NCR과 AACR2R(1998)은 기술대상자료를 기술함에 있어서 기술수준을 3가지 수준으로 제시해주고 있으나 KCR4판 초안은 다루고 있지 않다.

먼저, C. A. Cutter는 편목의 간략(short), 중간(media), 완전(full)수준의 타당성을 인식하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대학교 김자후 교수님의 논문 “한국목록규칙 4판(초안)에 대한 제언”을 참고하길 바란다.

고 그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간략목록이나 중간수준 목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완전수준도 더 완전한 수준 혹은 가장 완전한 수준이 있을 수 있다”²⁾고 했다. 이는 도서관 환경에 따른 목록 작성에 대한 이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Cutter의 이러한 개념을 계승하는 AACR2R 규칙 1.0D와 NCR 규칙 1.0.5에서 서지기술수준을 3수준으로 나누어 각 도서관의 장서규모와 필요성에 적합한 수준을 적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NCR과 AACR2R에서는 적어도 서지기술의 3수준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ACR2R
(1.0D Level of detail in the description)

1.0D1. First level of description

Title proper / firs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if different from main entry heading in form or number or if there is no main entry heading. - Edition statement. - Material (or type of publication) specific details. - First publisher, etc., date of publication, etc. - Extent of Item. - Note(s). - Standard number

1.0D2. Second level of description

Title proper [GMD] = Parallel title : other title information / firs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 each subsequen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 Edition statement / firs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the edition. - Material specific details. - First place of publication, etc. : first publisher, etc., date of publication, etc. - Extent of item : other physical details ; dimensions. - (Title proper of series / statement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series, ISSN of series ; numbering within the series. Title of subseries. ISSN of subseries ; numbering within subseries). - Note(s). - Standard number

1.0D3. Third level of description

For the third level of description, include all elements set out in the following rules that are applicable to the item being described.

이러한 기술의 수준은 표제지상에 나타난 정보 가운데 두 번째 발행사항, 대부분의 주기, 다국어 사본 정보 같은 특정 데이터 요소를 포함시킬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함으로서 편목자가 편목규칙과 자관의 정책 범위

내에서 자관 정보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수준 및 데이터 요소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수준이 자관의 다양한 환경이나 규모에 따라서 각 데이터요소의 기술을 취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 Kumar 등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량은 관종별 유형, 재정적 지원 가능성, 문헌의 특성 및 목록의 성격 등에 준해야 하며, 비용이 고려되는 경우 최소한의 서지기술만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³⁾고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 시대나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요소는 자관이 취급하는 정보자료의 특성에 따라 기술할 수 있도록, 항목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타이팅한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규칙만을 제공하고 융통성 및 확장성을 부여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CR4 초안이 KCR3판이나 2판을 개정대상으로 삼고 또한 이전 한국목록규칙에서 계속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KCR4판 초안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며, 앞에서 언급한 기술 수준에 대한 부분을 총칙에서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1.1)

1) 1.1.2 자료유형

KCR4 초안 1.1.2 자료유형에서 보면 12개의 자료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NCR과 AACR2R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Charles A. Cutter.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p. 11.

3) Girja Kumar and Krishan Kumar. *Theory of Cataloguing*,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6. pp. 72-73.

KCR4	NCR	AACR2R	
		List 1 (British)	List 2 (USA, Canada, etc.)
단행본 연속간행물 녹음자료 영상자료 정지화상자료 지도자료 약보 전자자료 마이크로자료 고문서와 필사자료 입체자료 접지자료	사진자료 지도자료 약보 녹음자료 영상자료 정지화상자료 컴퓨터 파일 박물자료 접지자료 마이크로자료	braille catographic material computer file gaphic microform motion picture multimedia music object sound recording text videorecording	activity card art original art reproduction braile chart computer file diorama filmstrip flash card game globe kit manuscript map microform microscope slide model motion picture music picture realia slide sound recording technical drawing text toy transparency video recording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유형 구분은 비슷하나, AACR2R에서는 영미권 2개로 나누어져 기술하고 있으며, NCR과 KCR4는 List 1 (British)에서 사용하는 자료유형과 비슷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NCR과 AACR2R에서 언급된 자료유형은 일반자료표시(General Material Designation) 즉,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일반자료표시의 명칭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점은 KCR4 초안 1.1.2.1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유형이 일반자료표시에 해당하는 명칭인지 아니면 KCR4 초안이 담고 있는 12가지의 자료유형(1.1.2.1에서 제시한 자료유형이 제1부 기술의 목차 제2장부터 제13장 순서와 동일하다)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첫째, 전자일 경우라면 일반자료표시에 단행본(book)과 연속간행물(serial)이란 자료표시가 필요한가이다. NCR에서 제시하는 자료유형을 보면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AACR2R에서는 text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연속간행물 또한 배제되어 있어, 각

장의 GMD부분에서 총칙을 따르도록 하는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KCR4에서는 인쇄자료 중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칙을 1.1.2.2(기술방법)의 3)4)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며 총칙에서 다루기보다는 각 장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12장 연속간행물 12.1.2 자료유형에서는 “인쇄형태의 연속간행물에서는 자료유형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된 수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KCR4에서 다루고 있는 12개의 자료 유형을 나타낸 것이라면 1.1.2.2(기술방법)에서 자료유형표시에 대한 설명을 언급해주어야 한다. KCR4 초안에서 보면, 각 장의 자료유형 아래에 “(종별의 유형)5)”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제1장 총칙 1.1.2 자료유형에서는 “각 장에서 자료종별유형을 다룬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자료유형표시에 대한 용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1.1.2 자료유형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2) 1.1.2.2 기술방법

1.1.2.2 자료유형의 기술방법에서 KCR4판 초안과 AACR2R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KCR4판 초안은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4) 1.1.2.2 (기술방법)의 3) 인쇄자료 중 문자로 쓰여진 자료(단행본, 필사자료, 인쇄형식의 연속간행물 등)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단일유형의 목록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5) 각 장에서의 자료유형에서의 “종별유형”이란 말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8장 정지화상자료에서 8.1.2 자료유형 아래에 8.1.2.1 (유형)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11장 마이크로자료에서는 11.1.2.1 (자료의 유형)이란 용어로 쓰여져 있으므로 “유형”인지 “종별”인지 각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KCR4
<p>1.1.2.2 기술방법 자료유형은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로 묶어 기재한다. 종합표제 대한 개별저작의 표제를 기술한 경우에는 마지막 표제 다음에 기재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아리랑 [녹음자료] Infancy ; Childhood [video recording] ∴</p>
AACR2R
<p>1.1C1 시각장애자를 위한 자료에 대해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braille), (large print), (tactile) 등의 용어를 부기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map (tactile)] [music (braille)] [text (large print)]</p> <p>1.1C4 둘 이상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둘 이상의 부분이 별도의 자료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multimedia] or [kit]을 부기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Changing Africa [multimedia] or Changing Africa [kit]</p> <p>1.10 둘 이상의 형태로 된 자료 1.10A 이 규칙은 둘 이상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둘 이상의 부분이 별도의 자료유형(예를 들면 도서와 녹음자료)에 속하는 자료에 적용한다.</p> <p>1.10C1 일반자료표시. 일반자료표시를 사용하고 있고(1.1C를 보라),</p> <p>a) 동시에 자료가 종합서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1.1C2에 따라</p> <p style="padding-left: 2em;">Life in the time of Charles Dickens [filmstrip]. The story of time [sound recording]</p> <p>b) 종합서명이 있는 경우는 1.1C4에 따른다.</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KCR4판 초안에서 다루는 자료유형의 기술방법 항목은 보다 간단하게 제시되고 있다. AACR2R(1.1C1)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자료를 보충하는 용어를 괄호(())를 사용하여 부기하는 것과 같이 KCR4에서도 이러한 사항이나 용어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AACR2R의 1.1C4에서 보듯이 자료의 유형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두 개의 이상의 부분이 별도의 자료유형에 속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규칙을 기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ISBD에서도 복수의 자료유형에 대한 규정이 있다(AACR2R 1.10C1의 a)항목과 동일).

이와 비교한다면 KCR4는 상기에 언급한 규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제6장 녹음자료의 6.1.2 자료유형에서 “6.1.2.1 (중별의 유형) 기술 대상자료에 자료유형이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된 자료에서는 주된 구성요소의 자료유형만을 표시한다. 기타요소의 중별은 딸림자료나 주기에 기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악보, 녹음자료, 마이크로자료⁶⁾에만 있고, 다른 자료 유형의 장에는 기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예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자료의 각 장에서 다루어지거나 또는 전체 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총칙 1.1.2.2 (기술방법)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 1.1.3 대등표제

AACR2R에서는 대등표제에 관련하여 제2기술수준과 3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대등표제가 몇 개가 되던 표제사항에 (=)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KCR4에서 1.1.3 대등표제 항목의 1.1.3.2 (기술방법)의 2)번 항목에서 보면 “대등표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활자의 크기나 기재순서에 따라 첫 번째 대등표제만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의 대등표제는 ‘대등표제’란 도입어구를 사용하여 주기사항에 기재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이하 대등표제를 주기사항에 기재하는 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AACR2R에서 보듯이 표제사항에 대등표제를 다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며, 주기사항과 표제사항에 따로 분리하여 기술한다는 것은 번잡함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6) 악보와 녹음자료부분에서 자료유형 기술방법을 기술하는 형식 또한 통일되지 못하다. 악보, 마이크로자료에서는 (기술방법)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녹음자료에서는 6.1.2.1 (중별의 유형)에서 복수로 구성된 자료 취급 규칙을 기재하고 있다.

11장 마이크로자료의 11.1.3 대등표제의 예문은 총칙과 불일치하며, 총칙에서 정확한 규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사항

위에서 언급된 사항은 각 목록규칙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며, 다음은 규칙 조문을 분석한 결과 미미한 것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각 항목의 조문에 대해 설명하는 예문이 설명과 부합되지 않거나, 특히 발행사항이나 형태사항에서 제시되는 예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AACR2R에서 예제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예문에 대한 수정이나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문표기에 관련하여 수량이나 연도를 비워두어야 할 경우 공간에 대한 예시를 NCR과 같이 “ ”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제1장 총칙에 관하여 각 규칙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먼저, 장의 구성에 있어서는 ISBD(G), AACR2R(1998), NCR, KCR4(초안) 모두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자료 참고). 또한 전반적인 규칙 항목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었기 때문에 AACR2R과 거의 동일하다.

서로 유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그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편목의 수준을 언급하지 않고 편목시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맞추어 규칙을 제정하기 보다는 AACR2R이나 NCR과 같이 기술의 3가지 수준을 제공하여 자관의 규모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항목이 앞으로의 미래의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술

규칙이나 새로운 기술요소들을 도출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서의 1.1.2 자료유형에 관련된 사항이다. (1) 1.1.2.1 (자료의 유형)이 자료유형표시에 기재되는 요소인지 KCR4판에서 다루고 있는 12개의 자료유형을 나타내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자료유형표시에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이 포함된 것은 다른 자료유형표시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각 장에서 자료유형표시(자료종별표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총칙에서 나열해주어야 한다. (2) 1.1.2.2 (기술방법)에 있어서 KCR4판(초안)은 너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자를 위한 자료표시나, 복수의 자료유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각 장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1.1.2.2 (기술방법)에서 자세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등표제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만 기술하고 주기사항에 넣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표제관련정보, 판표시, 형태사항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편목함에 있어서 세밀한 정도를 AACR2R보다는 간단히 다루었으며, 형태사항에 있어서는 예시를 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편목자에게 정확한 내용 이해가 힘들다고 보여진다. 이는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시들이 3판의 것이나 AACR2에서 설명없이 예시만을 옮겨와서 애매모호하고 불완전한 것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각 항목의 규칙과 함께 예시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별첨> 제1장 기술총칙의 규칙 비교 (KCR4, NCR, AACR2R, ISBD(G))

규칙 항목	KCR4	NCR	AACR2R	ISBD(G)
1.0	1.0 총칙 1.01 기술의 범위 1.02 기술의 대상 1.03 기술의 정보원 1.04 기술구조와 요소의 기재순서 1.05 기술방법	1.0 총칙 1.01 기술의 범위 1.02 기술의 대상과 서지수준 1.03 기술의 정보원 1.04 기술해야 할 서지적 사항과 기재순서 1.05 기술의 階級 1.06 기술의 방법	1.0 총칙 1.0A 정보원 1.0B 기술의 조직 1.0C 구두법 1.0D 기술의 수준 1.0E 기술의 언어와 필사 1.0F 오기, 오식 1.0G 엑센트와 다른 발음구분 1.0H 여러 정보원용 가전 자료	0. 예비규칙 0.1 범위, 목적 및 이용 0.2 정의 0.3 ISBD의 개요 0.4 구두법 0.5 정보원 0.6 기술의 언어와 문자 0.7 요약과 약어 0.8 대문자 0.9 Examples 0.10 Misprints 0.11 Symbols 등
1.1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1.1.0 총칙 1.1.1 본표제 1.1.2 자료유형 1.1.3 대등표제 1.1.4 표제관련정보 1.1.5 권자, 표자, 연차표시 1.1.6 책임표시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1.1.1 본표제 1.1.2 자료종별 (임의규정) 1.1.3 대등표제 1.1.4 표제관련정보 1.1.5 책임표시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1.1A 예비규칙 1.1A1 구두법 1.1A2 정보원 1.1B 본표제 1.1C 자료종별 1.1D 대등표제 1.1E 표제관련정보 1.1F 책임표시 1.1G 종합서명이 없는 정보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1.2 일반자료표시 1.3 대등표제 1.4 표제관련정보 1.5 책임표시 1.6 본표제가 없는 자료
1.2	1.2 판사항 1.2.1 총칙 1.2.2 판표시 1.2.3 특정판의 책임표시 1.2.4 부차적 판표시 1.2.5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1.2 판사항 1.2.1 판표시 1.2.2 특정판의 책임표시 1.2.3 부가적 판표시 1.2.4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	1.2 판사항 1.2A 예비규칙 1.2A1 구두법 1.2A2 정보원 1.2B 판표시 1.2C 판의 책임표시 1.2D 부차적 판표시 1.2E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2.1 판사항 2.2 대등판사항 2.3 판의 책임표시 2.4 부가적 판표시 2.5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
1.3	1.3 자료특성사항	1.3 자료(또는 간행방식) 특성사항 1.3.1 서지적 사항의 범위 1.3.2 기록방법	1.3 자료특성사항	3. 자료특성사항
1.4	1.4 발행사항 1.4.0 총칙 1.4.1 발행지, 배포지 1.4.2 발행처, 배포처 1.4.3 발행년, 배포년 1.4.4 제작사항	1.4 출판·분포 등 관련사항 1.4.1 출판지, 배포지 등 1.4.2 출판자, 배포자 등 1.4.3 출판년, 배포년 등 1.4.4 제작항목 (제작자, 제작자, 제작년)	1.4 출판·배포 등 관련사항 1.4A 예비규칙 1.4A1 구두법 1.4A2 정보원 1.4B 총칙 1.4C 출판지, 배포지 등 1.4D 출판자, 배포자 등 1.4E 출판자, 배포자 등의 역할 부기 1.4F 출판년, 배포년 등 1.4G 제작지, 제작자, 제작년 등	4. 출판·분포 등 사항 4.1 출판지, 배포지 등 4.2 출판자, 배포자 등 4.3 배포자 사항 4.4 출판년, 배포년 등 4.5 제작지 4.6 제작자명 4.7 제작년
1.5	1.5 형태사항 1.5.0 총칙 1.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1.5.2 기타 형태사항 1.5.3 크기 1.5.4 말림자료	1.5 형태사항 1.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수량 1.5.2 그외의 형태적 세목 1.5.3 크기 1.5.4 말림자료	1.5 형태사항 1.5A 예비규칙 1.5A1 구두법 1.5A2 정보원 1.5B 자료방위 1.5C 그외의 형태적 세목 1.5D 크기 1.5E 말림자료	5. 형태사항 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범위 5.2 그외의 형태적 세목 5.3 크기 5.4 말림자료
1.6	1.6 총서사항 1.6.0 총칙 1.6.1 총서의 본표제 1.6.2 총서의 대등표제 1.6.3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1.6.4 총서의 책임표시 1.6.5 총서의 ISSN 1.6.6 총서의 권호 1.6.7 하위총서	1.6 시리즈 관련사항 1.6.1 본시리즈명 1.6.2 대등 시리즈명 1.6.3 시리즈명 관련정보 1.6.4 시리즈의 책임표시 1.6.5 시리즈의 ISSN 1.6.6 시리즈의 권호 1.6.7 하위 시리즈의 서지적 사항	1.6 총서사항 1.6A 예비규칙 1.6A1 구두법 1.6A2 정보원 1.6B 총서의 본표제 1.6C 총서의 대등표제 1.6D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1.6E 총서의 책임표시 1.6F 총서의 ISSN 1.6G 총서의 권호 1.6H 하위총서 1.6J 하나 이상의 총서사항	6. 총서사항 6.1 총서의 본표제 6.2 총서의 대등표제 6.3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6.4 총서의 책임표시 6.5 총서의 ISSN 6.6 총서의 권호
1.7	1.7 주기사항 1.7.0 총칙 1.7.1 주기의 범위 1.7.2 기술방법 1.7.3 주기의 종류와 기재순서	1.7 주기사항 1.7.1 주기 1.7.2 기록방법 1.7.3 주기의 종류	1.7 주기사항 1.7A 예비규칙 1.7A1 구두법 1.7A2 정보원 1.7A3 주기 형식 1.7A4 판과 저작에 관련된 주기 1.7B 주기	7. 주기사항
1.8	1.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1.8.0 총칙 1.8.1 표준번호 1.8.2 등록표제 1.8.3 입수조건표시	1.8 표준번호, 입수조건사항 1.8.1 표준번호 1.8.2 key title (임의규정) 1.8.3 입수조건·평가 (임의규정)	1.8 표준번호와 입수조건사항 1.8A 예비규칙 1.8A1 구두법 1.8A2 정보원 1.8B 표준번호 1.8C Key-title 1.8D 입수조건 1.8E Qualification	8. 표준번호, 입수조건사항 8.1 표준번호 8.2 Key-title 8.3 입수조건·평가 8.4 Qualification
1.9		1.10 폴리단위 1.10.1 폴리단위의 서지적사항 1.10.2 폴리단위의 기록구성	1.9 보유자료 1.9A 독립적으로 기술되는 보유자료 1.9B 종속적으로 기술되는 보유자료	
1.10			1.10 여러 가지 형태로 된 자료	
1.11			1.11 복사본, 사진, 기타 복제본	